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1147 호

다. 제출일자 : 2023. 8. 14.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제안이유

-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 역할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삭제)
- 나. “재난수습 주무부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 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라.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4호)

마.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출석, 대리출석한 위원에 의결권 부여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총괄지원관” 임무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을 두고 그 역할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로는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를 상위법 정의로 대체하면서 삭제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는 한편,
 - ②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 공무원 위원의 대리출석 및 의결권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
 - ③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총괄지원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나. 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
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
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
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11.·12. (생략)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략)

<신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
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2. (생략)

3.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설>

4. (생략)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자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생략)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
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

<삭제>

10.·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말고-----

----- 말한다.

② -----

-----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하며----- 사람이 --.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재난관리책

임기관-----

7. -----

----- 사람

8. ----- 사

람 중-----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

항제8호-----

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 3. (생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신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 ⑨ (생략)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생략)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신설>

4. (생략)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있으며, ----- 담당과장이 맡는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② ----- 총괄지원관, 통제관-----

1. (현행과 같음)
2. -----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 업무 등을 -----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 -----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

<p>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p>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u> 5. ~ 9. (생략)</p>	<p>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재난관리책임기관</u>----- ----- 5. ~ 9. (현행과 같음)</p>
<p>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u>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u>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p>	<p>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재난관리책임기관</u>----- ----- -----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3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u> 2. <u>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u> 3. <u>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u></p>	<p><삭제></p>
<p>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u>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u>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p>	<p>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u>시의</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55조(자원봉사자) ① -----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 -----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6조(재정지원) ① (생략)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p>	<p>제5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람</u>-----</p>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용어 정의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현행 제2조제9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10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u>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나. 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u>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11.·12. (생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삭제> 10.·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 먼저, “재난관리책임기관”(현행 제2조제9호), “재난관리주관기관”(현행 제2조제10호)의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임.

- 여기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이며(〔붙임 1〕 참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붙임 2〕 참조)
-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실질적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본문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를 삭제하기보다는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축약하여 명시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조례 이해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표〕 참조).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

-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 13. (생략)

<p>목의 기관을 말한다. <u>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u> <u>나. 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기관</u>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11.·12. (생략)</p>	<p><u>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10.·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p>관을 말한다.</p>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	--

- 다음으로, 안 제2조제9호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로 정의하여 신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60개의 재난유형에 대해 수습 주무부서를 이미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붙임 3] 참조).
- ‘23.7월 수립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장은 대책본부회의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책본부 예하 13개의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²⁾의 반장역 할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명확하여 부서 간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추가신설하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 여겨짐.

[표] 대책본부 실무반 및 반장

연번	실무반	반장
1	상황총괄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담당관,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2	생활지원반	복지정책과장
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생활환경과장
4	통신지원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시설복구반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6	에너지복구반	녹색에너지과장
7	자원지원반	재난안전정책과장
8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장
9	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장
10	구조·구급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11	재난홍보반	언론담당관
12	질서·협력반	자치경찰총괄과장
13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자치행정과장

■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1) 소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 위원의 대리출석(안 제6조, 제9조)

- 안 제6조제2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상황총괄반의 역할: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수습 총괄 등(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및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략) <신설>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며,
-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0명 이내의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위기구임.
- 따라서, 개정안은 소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시간 신속하게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사료되며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9조제4항은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이 가능토록 하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 이는 상기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취지와 동일하게 업무 효율 제고가 목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본문 중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참석한 공무원에게 의결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할 때 임의의 “소속 공무원”보다는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실질적인 책임 및 결정권한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 -----

	<u>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u>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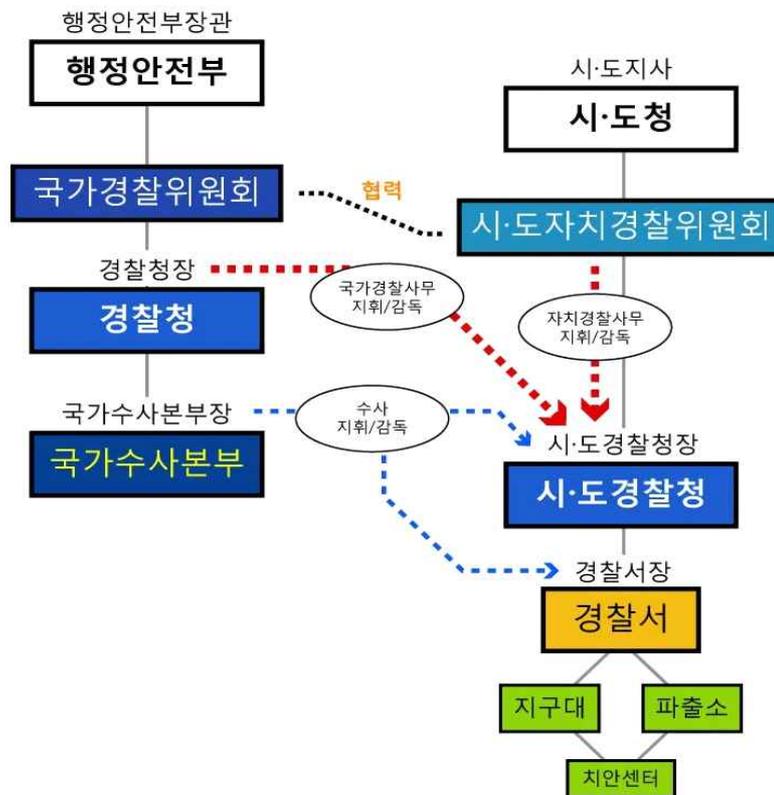
2) 자치경찰위원장을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은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2. (생략) 3.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설> 4. (생략)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생략)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말고----- ----- 말한다. ②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u> ----- 사람이 --. 1.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재난관리책임기관----- ----- ----- 사람 8. ----- 사람 중-----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심의·의결,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심의·의결체계 상 합당한 조치라 여겨짐.



[그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 체계도

- 또한, 동 개정안 제2항제3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21.7.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총괄지원관 신설에 대한 의견

- 안 제14조제2항은 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을 추가하면서 총괄지원관의 역할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u>시장</u>이되고, <u>본부장은</u>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u>통제관</u>,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p> <p>1. (생략)</p> <p>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p> <p>3. <u>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u>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p> <p><신설></p> <p>4. (생략)</p> <p>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u>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u>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u>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u>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생략)</p>	<p>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 <u>시장</u>이 맡으며, ----- -----.</p> <p>② ----- ----- <u>총괄지원관, 통제관</u>-----.</p> <p>1. (현행과 같음)</p> <p>2. -----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 업무를 -----.</p> <p>3. <u>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u>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p> <p>4. <u>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u> 업무전반을 통제한다.</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 ----- <u>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u> ----- -----.</p> <p>③ <u>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 동 개정안은 앞서 기술한 주요골자 외에 안 제7조제2항에 양성 평등담당관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 안 제15조제4호와 제36조제4호에만 사용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명칭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 또한, 안 제36조제4항과 현행 제38조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38조는 삭제하고 그 밖에 의미 명확화와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붙임 1] 재난관리책임기관

[붙임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붙임 3]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6. 27.>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국토안전관리원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67. 삭제 <2020. 6. 2.>
68. 삭제 <2020. 6. 2.>
69. 삭제 <2020. 6. 2.>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81. 부산항만공사
- 82. 인천항만공사
- 83. 울산항만공사
- 84. 경기평택항만공사
-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 87. 신분당선주식회사
-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 89. 삭제 <2020. 6. 2.>
- 90. 삭제 <2020. 6. 2.>
- 91. 삭제 <2020. 6. 2.>
- 92. 삭제 <2020. 6. 2.>
- 93. 삭제 <2020. 6. 2.>
- 94. 삭제 <2020. 6. 2.>
- 95. 해양환경공단
-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97. 국토지리정보원
- 98. 항공교통본부
-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 101. 주식회사에스알
- 102.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103. 서해철도주식회사
- 104.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붙임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 5.>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삭제 <2019. 8. 27.> 4. 도로터널 사고 5. 삭제 <2019. 8. 27.>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도시철도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운영 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8. 10.>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풍수해(태풍·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4		가뭄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5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6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한파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10		대규모 황사 발생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1	사회 재난	산불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12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3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4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15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6		도시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7		고속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8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9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1		가축질병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2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3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4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5		전력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6		원유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7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8		식·용수 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30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31	사회 재난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33		도시가스 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
35		위험물 사고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6		농수산물 유통마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8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39		해외재난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40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1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3		버스 총파업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44		택시 총파업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45		지하철 파업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46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47		지하철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48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9		지반침하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50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51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52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53		대형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54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55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6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7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정책관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58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9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60		열공급 중단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본부·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